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456

발의연월일: 2021. 9. 6.

발 의 자: 송재호·강선우·김정호

남인순 • 박성준 • 서영석

오영훈 • 이해식 • 조오섭

최종윤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항소음을 방지하고 소음대책지역의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 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항공교통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그러나 현행법상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지원사항 근거가 미흡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음. 또한 시설관리자와 사업시행자도 공항소음대책 및 주민지원사업을 이행할 의무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역할이 협소하고소극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지적임.

이에 다음과 같이 소음피해지역 지원 규정을 개정해 더욱 실효성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우선,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중기계획에 따른 연차별 공항 소음대책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내용 중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 사업 대상에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마을회관 등을 추가함.

현행법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지원사업계획 수립 시 주민지원사업에 대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게 되어있지만, 지원사업의 주체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정하고 있음. 이에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도 주민지원사업의 주체로 명시하도록 함. 또한 공항 인근 토지매수 청구 시 3종 지역도 모두 포함하도록 규

또한 공항 인근 토지매우 정구 시 3종 지역도 모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주민지원사업 시행자에 대해사업 자금을 지원할 시에 용지비까지 지원금에 포함되도록 설정하되지원비율의 규정을 삭제함.

그리고 소음대책지역 주민에게 소득세도 감면이 가능하도록 세제지원 항목에 추가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제3호, 제12조제1항, 제18조제5항, 제19조제2항·제3항, 제26조).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마을회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12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3종"을 "제3종"으로 한다.

제18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항의 협의에 따라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제19조제2항 중 "사업비의 100분의 7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를 "사업비(시설의 설치에 수반되는 부속설비, 기자재 비용 및 용지비를 포함한다)를"로, "자금을"을 "자금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업비 지원비율 등"을 "주민지원사업의"로 한다.

제26조 중 "대하여"를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으로, "재산세"를 "소득세·재산세"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공항소음대책사업의 계획	제8조(공항소음대책사업의 계획
수립 등) ① 시설관리자 또는	수립 등) ①
사업시행자는 중기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차별 공항소음대책사업계획	
(이하 "소음대책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3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된 냉방	
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시설관리자로 한정한다)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u><신 설></u>	라.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
	는 마을회관 등 대통령령
	<u>으로 정하는 시설</u>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토지매수의 청구 등) ①	제12조(토지매수의 청구 등) ① -
제5조제1항에 따른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또는 국토교통부령	제3종
으로 정하는 제3종 구역에 있	
는 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는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토 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 제18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7 ① ~ ④ (생 략)
 - ⑤ 주민지원사업은 해당 시장· 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학교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에 한 정한다)이 시행한다. <단서 신 설>

⑥ ~ ⑦ (생 략)

제19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 기

- ① (생 략)
- ②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별로드는 사업비의 100분의 7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민지원사업 시행자에게 제23조에따라 조성된 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u>사업비 지원</u> <u>비율 등</u>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u>.</u>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5
<u>다만, 제4</u>
항의 협의에 따라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할
<u>수 있다.</u>
⑥ ~ ⑦ (현행과 같음)
제19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비(시설의 설치에 수반
되는 부속설비, 기자재 비용 및
용지비를 포함한다)를
자금으로
③ 주민지원사
 업의

제26조(세제 지원) 지방자치단체 저의 장은 소음대책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지방세법」이나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u>재산세</u>·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26조(세제 지원)
- <u>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u>
<u>소</u>
<u>득세·재산세</u>